

[별표 17] <개정 2010.6.30>

(앞면)

사용정지표지(제47조 관련)

사 용 정 지	
자동차등록번호:	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: km
사용 정 지 기 간: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사용정지기간 중 주차 장소:	
위의 자동차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함	
[인]	

134mm×190mm[인쇄용지(특급) 120g/m²]

(뒷면)

이 표지는 "사용정지기간" 내에는 제거하지 못함
참고
1. 바탕색은 노란색으로,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.
2.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.
유의 사항
1. 이 표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2. 이 표의 제거는 사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합니다.
3. 이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58조제6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